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462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7일
제안자 : 교 통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기열 의원 외 12명, 정지권 의원 외 14명, 이승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19. 2. 2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정착 및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따라서, 3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일부를 통합·보완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자전거 이용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제5항 신설)
- 나.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2항)
- 다.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하거나 시장이 필요할 경우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제2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안)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④(생략)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④(현행과 같음)
<신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생략)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략)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교육 일체를 이수한 사람
	7. (현행 제6호와 같음)